

	189
	2003. 10. 15 ( 107 )

: 2003. 10. 13.

:

## □ 제안이유

- 살기 좋은 도시를 지칭하는 말 가운데 ‘걷고싶은 도시’라는 말이 있듯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목표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의 개선을 촉구하는 ‘보행권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거리의 주인이 되는, 걷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장의 기본책무로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 개선, 보행중심의 시설 확충,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명시함 (안 제3조)
-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시장이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개선, 보도 및 횡단보도의 설치, 학교통학로 및 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차 없는 거리 및 보행자 우선도로 등에 대한 조성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안 제6조)
- 보행환경 기본계획,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등 보행환경개선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내지 제13조)
- 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1년이내에 수립 시행하도록 함 (부칙 제2항)

## 부천시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견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또는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견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 5년마다 부천시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 교통시설의 설치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조성기준을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도의 정비 및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학교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차없는 거리 및 보행자 우선 도로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
2.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 전문가,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참여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 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시행하도록 한다.